

「구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의 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장의 조리행위가 허용됨에 따라,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옥외영업 조리행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여 옥외영업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옥외영업 제한 예외구역 명확화(제6조)
- 옥외영업장에서 음식물 조리행위(단순가열) 허용(별표2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
-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: 정책기획과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: 신·구조문대비표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의 개정으로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장의 조리행위가 허용됨에 따라, 옥외영업 조리행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옥외영업 제한 예외구역인 진평 음식문화 특화거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, 옥외영업장에서의 음식물 조리행위 허용을 반영하는 것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식품접객업소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.
- 향후, 집행기관은 옥외영업장 신고업소에 대하여 옥외영업 가능여부, 제한사항 해당여부 및 타법 위반사항 여부 확인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먹거리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.